

2024년 3월 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NEWS LETTER	발행인: 강철규 편집인: 배영목
0316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2 광화문의 김 402호 Tel. (02) 598-4652-3 Fax. (02) 598-4653 Email : sies@sies.re.kr Homepage : www.sies.re.kr		

이사회, 총회 개최 결과

◇ 2월 16일 개최된 이사회, 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과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서울사회경제연구회 발전기금’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발전기금 규정은 연구소 기금 모금과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발전기금 규정을 <별첨>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현학술상 준비 현황

◇ 학현학술상 후보자 추천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어 3명의 경제학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3월과 4월에 걸쳐 심사를 하여 수상 후보자를 학현학술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5월 10일(금)에는 수상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장과 논평> 게시 안내

◇ 연구소 홈페이지 ‘주장과 논평’ 메뉴에 회원의 칼럼과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18편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필자는 강철규, 김두규, 나원준, 류동민, 박복영, 신현호, 유철규, 이정우, 임일섭, 장세진, 전강수, 정성춘, 조복현, 지만수 님(가나다순)입니다. (☞ ‘주장과 논평’ 바로가기) 신문, 잡지에 실린 글이나 방송 동영상 등의 파일 주소를 연구소에 알려주시면 홈페이지에 링크해 올리겠습니다.

「SIES 이슈와 정책」 제66, 67호 발행

- ◇ 「SIES 이슈와 정책」 제66호; 이상영, “도대체, 부동산PF는 무엇이 문제인가” 가 2월 8일 발행되었습니다.
- ◇ 「SIES 이슈와 정책」 제67호; 유재원, “독일 경제는 가라앉는가” 가 2월 16일 발행되었습니다.

주무관청에 2023년 사업보고 완료

◇ 우리 연구소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에 2023년도 사업보고를 2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3월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2024년 3월 운영위원회가 8일(금) 오후 2시부터 연구소 회의실 및 줌에서 병행 개최됩니다.
주소1(클릭)

3월 월례토론회 개최 안내

◇ 3월 월례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장소: 연구소 회의실 및 줌 병행

주소2(클릭)

- 일시: 3월 8일(금) 오후 3시 ~ 5시 50분

월례토론회1 (오후 3시 ~ 4시 20분)

발 표: 박복영 교수(경희대)

“국제투자통화의 선택: 지정학 시대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시사점”

월례토론회2 (오후 4시 30분 ~ 5시 50분)

발 표: 이상영 교수(명지대)

“한국형 부동산 PF의 문제”

회원 동정 및 알림

◆ 이제민 교수가 *The Tortuous Path of Sou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을 2024년 1월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서적 검색 ☞)

◆ 이종기 상영무역 회장이 2월 6일 500만 원을 연구 후원금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종기 회장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회비납부 안내

◇ 회비금액: 정회원 월 3만원/5만원/10만원
 준회원 연 10만원

◇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국민은행 809-01-0199-634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농협 052-01-078461 서경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전기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연구소의 발전과 원활한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특정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출연하는 일반기부금, 특정 목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그리고 연구소 운영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② 출연은 매년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출연을 약정하는 방식, 일회적 방식 등을 포함하여 출연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기금은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원금보존기금은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금에 대한 과실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임의기금은 원금 사용이 가능하나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기탁자의 요구에 따른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기부자 명단과 기부액은 기부자 의사를 고려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기금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소 이사장이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금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조성, 사용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시행) 이 규정은 2024.2.16.부터 시행한다.